

중재 판정 사례 ③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유류절감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①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유류절감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품 목	아파트 난방공사	
신청금액	67,102,965원	중재비용: 1,768,133원
신청일	2003. 5. 21.	
판정일	2003. 10. 21.	
처리기간	153일	
판정금액	0원	

A는 2001. 10. 29. B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난방용 유류절감을 목적으로 메모밸브 설치공사를 68,981,000원에 계약하고 동년 11. 1.부터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2. 1월부터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기로 약정하였다.

A는 계약상 에너지 절감량이 B의 아파트 연간 사용량 800,000ℓ 의 6%에 해당하는 48,000ℓ 만큼 설치 후 1월부터 4월까지 초과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메모밸브설치효과가 지역난방체계에 서 온수의 순환이 1일 기준 24시간 계속하여 순환되는 난방체계에서는 그 효과가 있으나, B가 관리하는 중앙집중난방체계에는 시간제로 공급하여 효과가 없으며, 계약서상의 절감률은 10%이므로 설치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B의 △△아파트가 메모밸브설치로 유류를 10% 절감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A의 전 증거를 살펴봐도 B의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간헐 난

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메모밸브는 간헐난방방식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메모밸브를 설치하였으나 별다른 유류 절감효과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현장철거에 대한 공사잔대금 청구

① 사건개요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현장철거에 대한 공사잔대금	
품목	철거공사	
신청금액	10,000,000원	중재비용: 220,000원
신청일	2003. 7. 10.	
판정일	2003. 8. 29.	
처리기간	54일	
판정금액	7,680,000원	

A는 B의 현장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 40,000,000원으로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사를 공정대로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A는 B가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B가 주장하는 미시행 철거 부분은 구두 현장설명 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사건 공사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존 건물의 기초연약지반으로 철거 시 건물 위험으로 철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가, 후속공사가 A에게 낙찰될 것을 믿고 약정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후

속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A가 완료하지 못한 잔여공사 부분을 다른 업체에게 맡겨 시공, 추가경비가 발생된 바, A가 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의 임원이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A가 미시행한 부분을 명기하고 있는 점, B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견적을 제시하면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점, 신청의 C는 A가 건물붕괴위험으로 철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를 시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에서 A가 미시행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행한 부분의 공사비를 신청의 C가 시행한 공사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에 기하여 계산하여 이를 A의 부담으로 하도록 판정하였다.

3. 부당한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① 사건개요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부당한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품목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신청금액	339,543,198원	중재비용: 8,972,873원
신청일	2003. 7. 31.	
판정일	2003. 12. 29.	
처리기간	151일	
판정금액	339,543,198원	

A는 B와 2000. 9. 28.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

하여 공사계약금액을 금 10,878,2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1. 6. 11. 국산 임광석을 대량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를 중국산 임광석으로 변경기로 하되 외벽석재를 24mm에서 30mm로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후 공사를 시공하여 2002. 10. 4.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10. 7. 정산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금 11,432,493,299원으로 확정하였다.

A는 B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금 780,522,399원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정산계약은 더 이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최종적인 합의로서 정산계약의 당사자들은 동 정산합의 내용에 관하여 차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약속하였으므로 미지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와 정산변경 도급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에 있어서 노무비는 종전 노무비를 적용하고 변경된 재료비만을 반영하였으나 위 노무비 계산이 착오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로 인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노무비 계산에 대하여 신규비목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을 몰라서 착오로 그 금액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B의 필요에 의하여 A가 계산한 금액을 B가 인정하는 전제 아래 재료비는 감액하고 노무비는 인상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커닝의 역사 - 우리 선조들도 커닝을 했을까?

우리는 흔히 시험 볼 때의 부정행위를 “커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커닝(cunning)이라는 말은 “교활한, 치사한, 악삭빠른, 재간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서, 원래 영어에서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말은 “cheating”이다. 따라서 “커닝”을 영어로 쓸 때는 “cheating”으로 써야 옳다. “커닝”은 일본인이 만든 국적불명의 영어다.

그런데 그렇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커닝을 했을까. 우리나라는 군자지국이므로 점잖지 못한 행위인 “커닝”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없었다. 단지 한말에 이 “커닝”이라는 말이 수입되면서 “감인고”라는 말로 속칭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규태의 「눈물의 한국학」에서 보면 시험 부정의 유형에 따라서 상세한 호칭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과거 시험장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10개의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커닝이나 예비 커닝 행위를 발견하면 그 수법에 따라 각기 다른 도장을 시험지에 찍어 급락 판정에 착작토록 했다. 예를 들면, 옆의 답안지를 훑쳐보려다가 들키면 “눈동자를 굴린다”는 뜻인 “고반”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또 옆 사람이 듣게끔 답을 말해 주면 “중얼거린다”는 뜻의 “음아”라는 도장을 찍었고, 감독관의 눈을 피해 시험지를 바꾸면 “환관”이란 도장이 찍혔다.

그리고 우수한 수험생 곁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 예비 커닝 행위로 간주해 “이석”이라는 도장을 찍었고, 감독관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거나 투덜거리면 “항거”라는 도장을 찍었으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미완성일 때는 “불완”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가 하면 권력형 커닝도 있었다. 이것을 “대필”이라고 하는데, 권력 계층의 사람이 시제를 미리 알아내 명사로 하여금 문장을 짓게 하여, 그 문장을 외워 과거장에 나가 쓰는 수법이었다. 한말의 세도가 자제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적잖이 등과했다고 한다.

또 “대인”이라고 해서 대리 시험도 있었다고 한다. 사진 첨부가 없었던 때라 수월했겠지만 이는 대부분이 감독관과 내통한 권력형 부정 행위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커닝 역사도 유구하다. 전통은 좋은 것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